

입법 정책 정보

Legislation & Policy Information

최근 법령 정보

- 제 · 개정 법령
- 주요 판례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 참고할 타 시 · 도 조례

의정활동 정보

- 지방자치 네트워크 활동
- 학계 동향
- 주목할 타 시 · 도의회 동향

정책제언

정책연구를 통해 본 경북

시사정보

- 최신 이슈
- 읽어 볼 만한 책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

최근 법령 정보

■ 제·개정 법령

03

- 지방자치단체, 과학·수학·정보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03
- 도시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해야 한다 / 03

■ 주요 판례

04

- 도시사가 시·군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 / 04
- 명확한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04
-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회비는 정치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 05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06

- 시·도의회 의장의 당적보유를 조례로 금지할 수 없다 / 06

■ 참고할 타 시·도 조례

07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교육'의 실시를 조례로 명시 / 07
- 천연기념물의 보호활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 08
-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상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09
-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로드킬 방지 및 사체 처리를 지원하는 근거 명시 / 10

의정활동 정보

■ 지방자치 네트워크 활동

11

- 전국시도의회지방협의회, 『지방의회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개정 요구 / 11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자체 홍보를 위한 외국공관 간담회 개최 / 11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 요구 / 12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4대 협의체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 설치 요구 / 12

■ 학계 동향

13

- 지방자치시대 자치경찰제는 광역에서 기초로 이행하는 절충형 방식으로 만들어야 / 13
-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는 RHRD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 13
- 올바른 자치분권을 위해서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의 폐해를 정확히 진단하고 극복해야 / 14
- 부당하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를 정비해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 14

■ 주목할 타 시·도의회 동향

15

- 대구광역시의회,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위해 광주광역시의회와 손잡아 / 15
- 대전광역시의회, '2017년 민간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 15
- 경기도의회, 폐기도서를 활용한 지역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MOU 체결 / 16
- 충청북도의회, 도민과 함께 하는 '2018 충북도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 16

정책제언

- 사회적 경제 육성으로 차별 없는 경상북도 만들자 / 17
- 지역부흥을 위해, 지역, 사람, 일자리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18
- 안동·예천 신도청시대, 경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새로운 통합전략이 필요하다 / 19
- 경북농업의 미래, 치유농업으로 열어야 / 20

정책연구를 통해 본 경북

- 경상북도, 평등하고 행복한 지역 만들기 위해 여성가족정책 공감도 높여야 / 21
- 경상북도, 지역사회가 다문화가족의 성장과 교육에 관심 기울여야 / 22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과적 환류방안을 모색해야 / 22
- 중증(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사업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 23
- 시군장애인복지관, 복지서비스 기관 연계를 통해 자립생활지원기반으로 거듭나야 / 23

시사정보

■ 최신 이슈

24

- 액상화(液狀化) 현상이란? / 24
- 석도는 독도, 시마네현 총무부 소장 자료에서 일본인 구술록 발견 / 25

■ 읽어 볼 만한 책

26

- 인간의 살림살이 / 26
- 강한 리더라는 신화 / 26
- 과로노인 / 27
- 정치인의 식탁 / 27

최근 법령 정보

■ 제·개정 법령

지방자치단체, 과학·수학·정보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2017년 10월 24일 전부개정, 2018년 4월 25일 시행

-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은 기존의 『과학교육진흥법』을 전부개정하여, 제명을 변경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의 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 지방자치단체가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해 지정된 연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교육기관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교재 및 교육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필요한 전용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도지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해야 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7년 11월 21일 제정, 2018년 1월 1일 시행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및 지반침하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지하 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 동법 시행령은 지하시설물 및 지하정보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집행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시기 및 절차,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및 지하침하위험도 평가의 대상사업, 평가·조사의 항목 및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집행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Ⅰ 주요 판례

도지사가 시·군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취소청구(2017. 10. 12. 대법 선고 2016추5148 판결)

- Q :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A :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69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가 행한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 시정 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한다.

명확한 선거운동이 아니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2017. 10. 31. 대법원 2016도19447 파기환송)

- Q :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문서배부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 A : 『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5호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살포·게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3조제1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살펴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9조제2호에서 정한 문자메시지는 5회 이내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1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어기고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는 그것이 비록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서배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경비를 수수한 행위는 비록 직접적인 지지호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기와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둘째 비록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자메시지 전송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충전한 금액은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정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회비는 정치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2017. 11. 14. 대법원 2017도3449 상고기각)

Q :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자에게 구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A : 구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과 제3조제1호에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 2013도9866 참조). 정치활동이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구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의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는 같은 호에 열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공직선거 및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헌재 2013헌바169 참조).

구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 받은 자는 이른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 공범관계는 행위자가 함께 행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을 뿐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선거에 당선을 하기 위해 성립되어 활동된 단체로 평가할 수 있고,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 사건 포럼의 각종 행사가 이루어 졌다면, 이는 구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서 열거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포럼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특별회비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위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이나 그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 즉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회비를 제공한 사람들이 그 특별회비가 정치자금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시·도의회 의장의 당적보유를 조례로 금지할 수 없다

시·도의회 의장에게 당적을 금지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법제처 2017. 10. 20.)

Q : 시도의회 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는 조례를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할 수 있는가?

A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를 제정·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 2010두19270 참조).

『정당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그 본문에서 정당의 당원 등이 될 수 없는 자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선출되므로 지방의회의원인 지방의회의장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법』 제20조의2에서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법』에는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이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도 없는바, 광역시의 조례로 광역시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참고할 타 시·도 조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교육’의 실시를 조례로 명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2017. 11. 8. 제정)

≫ 취 지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학교에서 인구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요 내용

- ‘인구교육’을 생산가능인구감소와 부양비 증가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제2조).
- 교육감은 체계적인 인구교육 수립·시행과 효과적 시행을 위한 시책마련의 책무를 가진다(제3조).
- 교육감이 학생교육, 교직원 연수, 학부모 교육,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제4조).
- 교육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5조).
- 인구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자료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지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제6조).

≫ 시사점

-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6월 태어난 신생아는 2만 8,900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약 12.2%로 감소하여, 2017년 신생아 수는 30만 명대로 떨어지고,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1.1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7명으로 0.04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2017년에는 1.12명으로 오히려 떨어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했던 2006년보다도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멸 위험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지자체 10개 중 6개가 경북 내 지방자치단체인 상황이다. 소멸위험 1위인 지방자치단체가 경북 의성군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경북의 시·군이 위험하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해 학교에서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인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천연기념물의 보호활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 2017. 11. 13. 제정)

» 취 지

- 문화재청에 의한 천연기념물의 보호활동에 불구하고, 경기도내 천연기념물인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등 문화재청 단독의 보호활동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천연기념물인 동·식물 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소요경비를 지원하여, 보호활동을 장려하고자 한다.

천연기념물이란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서 지정한 동물·식물·지질·광물 등을 말한다. 국보·보물·사적 및 명승·중요 민속자료·중요무형문화재 등과 함께 지정 문화재에 속한다. 천연기념물의 지정과 보호는 일제 침략기인 1933년 8월 9일 ‘조선 고적·명승·보물·천연기념물 보존령’이 공포되고 다음해부터 천연기념물이 지정되기 시작해 해방이전까지 지정번호 제1호인 ‘달성의 측백수림’을 비롯해 제146호까지 지정되었다. 현재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보전하고 있다.

» 주요 내용

- “천연기념물 동·식물”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로 한다(제2조).
- 경기도지사는 천연기념물 동·식물과 그의 서식지 및 번식지를 보호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제3조).
- 경기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해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제5조).

» 시사점

-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생태계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면서 생태 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천연기념물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동물·식물·지질·광물 등의 보존을 법으로 지정한 것이다.
- 2017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에는 393개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경상북도는 경산의 삼살개(천연기념물 제368호), 포항 북송리 북천수(천연기념물 제468호),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175호) 등을 포함해 모두 68개(17.3%)의 천연물을 보유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의 보존을 위해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상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2017. 10. 18. 제정)

≫ 취 지

- 고용과정에 성별, 연령, 학력,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 내용

-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한다(제2조).
- 시장은 고용상 차별행위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3조).
- 차별행위의 예외로 직무의 성격 및 근로기간, 법령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제5조).
-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에서 그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제7조).
- 시장은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제9조).
- 시장은 사업주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를 금지할 위한 홍보·교육 및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차별행위의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제10조).

≫ 시사점

- 청년실업률(11.2% 2017년 4월)이 높아지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학력, 성별, 나이, 출신 지역 등에 따라 구직과정에서 차별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 고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법률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경상북도 또한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고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를 폭넓게 금지하는 법규는 아직 없다.
- 따라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직과정에서 일자리에 맞는 능력 이외의 이유로 차별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로드킬 방지 및 사체 처리를 지원하는 근거 명시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2017. 11. 10. 제정)

≫ 취 지

-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과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해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드킬(Road Kill)이란 동물들이 자동차에 치어 죽는 것을 말한다. 도로 개발로 인해, 동물들의 길이 차단 되지만, 동물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길로 다니면서 자동차에 치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위나 밑으로 별도의 생태도로를 만들거나 운전자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기도 한다.

≫ 주요 내용

- “야생동물”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연 상태에서 서식 혹은 자생하는 동물과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로 한다(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로 한다(제3조).
-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야생동물을 위한 생태도로를 설치하거나, 운전자를 위해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제4조).
-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제5조).
-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체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6조).

≫ 시사점

- 전국 도로(약 10만km)중 국도와 지방도, 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244개 야생동물 로드킬 조사구간(약 4,300km)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매년 약 2만여 마리의 동물들이 로드킬로 희생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전국적으로는 매년 약 3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 2011년 조사에 따르면 경상북도가 강원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로드킬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북부권의 지방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로드킬은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위협을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예방과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의정활동 정보

■ 지방자치 네트워크 활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개정 요구

-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11월 28일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임시회를 개최하고, 중앙에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있듯이 지방에는 『지방의회법』과 『지방정부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비용 정부지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등 대정부 촉구 건의안 등 지방의회의 당면현안을 협의하고,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 이날 임시회에서는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달 26일에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연방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비전과 목표에 맞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제출안에 뜻을 같이 하고, 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어 있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올해 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해 줄 것과 지방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자체 홍보를 위한 외국공관 간담회 개최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는 12월 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를 포함한 42개국 대사와 공관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국제행사 홍보를 위한 제8회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관용 협의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알비누 말룽구 주한 앙골라 대사가 주한 외국공관을 대표해 축사를 했고, 아르슬란 하칸 옥찰 터키 대사가 ‘한-터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지방외교를 소개했다.
- 》 경상북도는 진행 중인 ‘호치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에 대해 소개하고, 경기도는 ‘2018 경기국제보트쇼’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 지자체의 국제행사 유치내용을 주한 외교사절에게 알림으로써 지자체의 국제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식후 공연으로 경북도립무용단의 농악가락에 맞춰 소고(小鼓)를 치며 춤을 추는 ‘소고춤’을 선보였다. 김관용 회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국제교류 사업이 성공하려면 주한 외국공관의 협력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정부에서 열리는 다양한 국제행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 요구

-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환설 여주시의회의장)는 11월 21일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제208차 시도대표회의'를 갖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국 15개 기초의회 시도대표가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는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 및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해 기초 의회의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완전한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기초의회와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 》 협의회는 이날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등을 묻는 '기초지방의회 정책 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2천 898명의 기초의원 가운데 설문 조사에 응한 1천559명 중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찬성 68.8%, 반대 29%로 나타났으며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찬성 87.9%, 반대 9.4%로 집계됐고, 소선거제 환원은 찬성 65%, 반대 31.6%로 각각 나타났다. 협의회는 이 자료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6일 예정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4대 협의체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 설치 요구

-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박성만 울산중구청장)는 11월 16일 울산 롯데 호텔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국총회를 개최했다. 민선 6기 4차 연도를 맞아 '지방을 살리자! 지방분권개헌'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110개 지자체 단체장이 참석했다.
- 》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지방분권형 개헌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 업무 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결의안에는 국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박성민 협의회장은 "이번 총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여야 정당 대표를 초청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전을 위한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학계 동향

지방자치시대 자치경찰제는 광역에서 기초로 이행하는 절충형 방식으로 만들어야

오승은(제주대 교수) “일본의 통합형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통권 제99호(2017. 9.)

- ≫ 이 논문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주민자치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우리나라 각 정권에서 도입을 검토하였던 자치경찰의 도입모형을 정리하고, 신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도입모형의 참고가 될 수 있는 모델로서 일본의 경찰제도를 상세히 고찰하였다. 일본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혼합한 절충형으로 양자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써,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여 일정수준의 치안서비스를 균일하게 제공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모범모델로서 연구되고 있다.
- ≫ 일본의 통합형 경찰제도는 국가가 통제하는 중앙집권적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방 분권적 경찰제도의 결합이다. 즉 국가행정기구인 경찰청이 기획, 조정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도도부현(都道府県) 경찰이 집행적 치안서비스를 분담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자치경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도입하는 이원형 구조이다. 실례로 일본은 미군정의 영향으로 미국식 분권형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가 재정력의 한계 등으로 실패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광역 수준으로 도입하여 점차 기초로 이행하는 절충형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미 도입한 제주자치경찰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해서는 RHRD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우선되어야

강현주(고려대 교수) 외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방향 탐색”, 교육문화연구 제23권제5호(2017. 10.)

-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청년 실업악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 등의 외부적 동력과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강화라는 정책 환경변화는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정책 운용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RHRD 정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그동안 RHRD 관련 연구가 실증적 분석보다는 정책의 필요성, 거버넌스 구축 등을 다루는 문헌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 연구는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RHRD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비하여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향후 RHRD 정책 방향 및 과제를 개발하고 우선순위를 실증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 ≫ RHRD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정부 수준에서 17개의 정책 방안이 도출되었고, 그 중 ‘RHRD 계획수행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포함한 최우선 순위 5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억제 정책마련’을 포함한 차순위군 2개를 확인하였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18개의 정책방안을 도출했다. 그 중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예산 확보방안 마련’을 포함해 최우선 순위 7개, ‘RHRD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별 전담 공무원 인력 양성 및 배치’를 포함한 차순위군 2개가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RHRD 활성화 방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올바른 자치분권을 위해서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의 폐해를 정확히 진단하고 극복해야

최진혁(충남대 교수) “지방분권의 제2도약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치분권 추진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통권 제99호(2017. 9.)

- ≫ 이 논문은 한국의 지방분권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집권적 지방자치의 폐해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진정한 선진국가로 갈 수 있는 논리를 찾아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참여정부와 MB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수행한 자치분권정책을 정확히 진단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제2도약의 동력을 삼고자 한다.
- ≫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첫째, 우리나라에 합당한 중앙-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국무회의 참석제도(제2국무회의)는 긍정적이다. 둘째, 중앙행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국세와 지방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자치입법권을 통해 자치역량이 강화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주민 자치적 측면을 강화한 지방분권개혁이 있어야 한다. 주민의식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지방민주주의를 위해 고객지향적이고 수요자중심의 논리에서 만들어 놓은 피동적 주민의 형상에서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자(co-producer)로서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주민의식과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당하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를 정비해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장교식(건국대 교수) “지방규제개선을 위한 조례 정비방안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제38권(2017. 10.)

- ≫ 이 논문은 그동안 자치법규가 초래한 주민생활 및 지역경제생활을 불편이나 부담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정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규제의 현실적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한 지방규제의 실패현황을 파악하고,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역현장에 맞지 않거나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생활 밀착형 규제중심으로 적법성과 법체계적 정합성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 및 지역의 경제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규제 및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제, 비현실적이거나 중복되는 규제 등과 같은 조례 속 규제실태를 조사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례가 적법성과 타당성을 갖추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해, 지방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 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현장에 맞는 규정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례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운용에 실질적으로 작용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수준에 맞도록 자치법규의 품질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과 지역특색을 반영한 자치입법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방자치도 한 단계 성숙하며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에 기여할 것이다.

■ 주목할 타 시·도의회 동향

대구광역시의회,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 위해 광주광역시의회와 손잡아

- ≫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이귀화)는 10월 30일 대구광역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택)와 함께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공동명의로 발표하고,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공동대응을 위한 합동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는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할 것과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5억 원에 대한 정부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 ≫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대구시철도시설과장이 달빛내륙 철도의 주요상황에 대해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했으며, 시민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등의 일정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기관 교통망은 남북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동서축 교통인프라가 빈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달빛내륙철도가 소통과 화합의 공동발전을 상징하는 의미가 큰 점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광주광역시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의회, '2017년 민간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

- ≫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윤시철)는 10월 30일 오전 11시, 대전광역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윤시철 의장을 비롯한 대전광역시의회 관계자와 권익호 새마을지도자 울산광역시협의회 회장 등 민간단체 대표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민간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민간단체의 주요현안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의회와 민간단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각 민간단체의 사업 내용 소개와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 이날 민간단체 대표들은 태화강 대공원 인근 게스트하우스 설치, 전국체전에 울산시 차원의 응원단 구성, 응급차량 통행을 위한 노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주차 계도 및 단속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윤시철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민간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그동안 활동 사항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며 “단체대표들의 조언과 질책, 건의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시 관련부서에도 통보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자주 소통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폐기도서를 활용한 지역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MOU 체결

- ≫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11월 24일(금) 오후 3시, 경기도의회도서관 탐나라상상그룹(주) 강우현 대표와 폐기도서 활용협력 관련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경기도의회 도서관에서 발생하는 훼손 도서, 정보가치의 하락 및 이용가치 상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도서를 탐나라상상그룹(주)에 지속적으로 기증하고, 탐나라상상그룹(주)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독서문화 장려 활성화를 모색함과 더불어 도서관문화콘텐츠의 개발·공유, 인적·물적 자원 및 정보 교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는 폐기도서에 대해 폐지처리 후 매각처분하였으나, 2017년부터 독서문화 활성화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도움을 주고자 필요기관에 기증하여 왔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 보유 중인 도서 중 훼손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자료가 지닌 정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보관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4,183권을 탐나라상상그룹(주)에 기증하고 재활용하기로 하였다.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의회와 탐나라상상그룹(주)간 향후 독서문화향유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뿐 아니라, 2020년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경기도의회도서관이 지역의 독서인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의회, 도민과 함께 하는 ‘2018 충북도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 ≫ 충청북도의회(의장 김양희)는 11월 22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민간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2018 충북도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가졌다. 충북도의회 사상 최초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충북도 및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 ≫ 이날 주제발표에는 손희준 청주대 교수와 김민희 대구대 교수가 각각 충북도 및 도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을 중심으로, 박홍주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이 성인지 예산의 실태 및 개선방향 등을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지정토론에는 윤홍창 충북도의원, 윤창훈 충청대 교수, 강창구 전(前) 상지영서대 교수 등을 6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이날 토론회를 제안하고 적극 추진해 온 김양희 도의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내년도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논의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활발히 수렴함으로써 도민 중심의 예산 편성은 물론, 향후 도정 및 교육시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책제언*

Ⅰ 사회적 경제 육성으로 차별 없는 경상북도 만들자

경상북도의회 의정자문단

권용수 자문위원

현)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교수



1. 심화되고 있는 사회불평등 해결을 위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 》 1997년 IMF 이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되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만성적 저성장으로 국가와 시장에 의한 문제해결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사회적 경제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경제의 틀 안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1,856개, 협동조합은 12,293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발생한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시장경제는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이지만, 사회적 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다.
- 》 국회에서는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제공, 지역 공동체 재생,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 등 공공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출하였다.
- 》 경상북도는 2016년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일자리본부에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2017년 주요도정시책에 사회적 경제 분야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6월 말 경북에는 206개의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 기업 포함), 104개의 마을기업, 496개의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806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있다. 또한 매년 사회적 기업 30개, 마을기업 10개, 협동조합 50개가 신규 설립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17년 4월에 기존의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경상북도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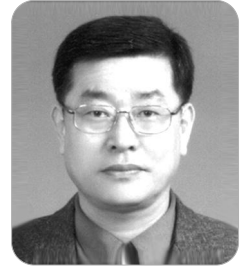
2. 사회적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체계적 평가와 지원이 필요하다

- 》 사회적 경제 영역의 재정적 지원 평가에 있어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여야 한다. 기업가 정신은 쉼페터의 기업가 정신에서 출발하지만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기업의 이윤을 어느 정도는 가져야 한다.
- 》 사회적 경제영역의 기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각 중앙부처의 정책자금이 분산되어 전달되어진다. 경상북도 지역에 맞는 사회적 경제영역의 방향을 설정하여 중앙부처의 자금과 경상북도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 사회적 경제영역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공공구매, 비즈니스 모델, 경영컨설팅, 재무컨설팅, 사회적 금융 등 간접적 지원 방식이 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가 사회적 경제영역의 지원경험이 많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 경제영역의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평가하여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본란의 의견은 도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지역부흥을 위해, 지역, 사람, 일자리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상북도의회 의정자문단
상희선 자문위원
현) ONLYHUB 대표



1. 지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체계적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역 젊은이의 유출을 방지하고, 고령자의 취업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북 진흥을 위한 기본대책 추진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도민건강생활권 형성을 목표로 하는 도·시·읍·면의 책무, 지원체제, 세무상의 조치 등을 법제화하고, 도민건강생활권 지원을 위한 지원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 ≫ 지역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커뮤니티를 확대·강화하고, 생활지원서비스사업의 실시 등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 도민건강생활권역 형성을 위한 기능·서비스의 거점화를 추진하고, 도민건강생활권역 내의 마을과 마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도민건강생활권역을 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로의 네트워크를 정비해야 한다.
- ≫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어드바이저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사업자 또한 지역개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을 진행하는 추진 부서 패키지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부금제도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

2.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지원정책과 이주지원정책이 필요하다

- ≫ 다자녀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셋째 아이 이후부터 무상보육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아동 놀이터의 개설시간 연장, 출산장려를 위해 불임치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 교육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제도를 창설하고, 학교·가정·지역이 함께하는 재정지원제도를 확충한다.
- ≫ 지역교육활성화를 위해 총괄 코디네이터제나 지역제휴담당교원 지원제도시스템 구축하고, 지역주민 연수를 위한 재정지원제도를 확립한다. 또한 지방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이주센터를 창설하여 이주에 관한 정보 제공과 원활한 이주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3. 6차 산업과 ICT 기술을 활용한 창업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 고령자 및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고, 6차 산업을 통해 건강한 농림수산업을 추진한다. 또한 농·산·어촌의 활력유지를 위해 피해방지대책과 종합대책교부금을 마련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 농림수산업 담당자를 육성하여 마을영농업인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착지원 제도를 조성한다. 또한 삼림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ICT를 활용한 농림수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안동·예천 신도청시대, 경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새로운 통합전략이 필요하다

경상북도의회 의정자문단
전한식 자문위원

현) 성주군 녹색실천연대 회장



1. 안동·예천 경북신도청, 도민의 77% 생활권역은 대구·울산·부산광역시권역에 가깝다

- ≫ 경상북도 개도(開道) 700년, 대구광역시와 분리된 이후 36년 동안 경북도청이 대구광역시에 있음으로 인해, 경북의 행정은 물론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중심이 대구에 치중되었다. 2016년 안동·예천으로 도청이전을 하면서 의회를 비롯한 기관이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경북도민의 44%는 여전히 대구광역시 인근 경산, 칠곡, 청도 등에 거주하고 있고, 경북도민의 33%는 신도청과 거리가 먼 동해안 5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 지역 도민의 생활중심은 경북 신도청과는 거리가 멀다.
- ≫ 실제로 대구광역시 인근 경산, 칠곡 등 대구 생활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은 경상북도 보다는 대구광역시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고, 교통·문화·교육이 대구권역에 속해 있어 향후 대구권으로 편입해 달라는 요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또한 동해안권역 5개 시군의 도민들의 생활권역은 경상북도보다는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 가까워 생활권역이 점차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안동·예천 경북신도청 중심의 새로운 통합전략이 필요하다

- ≫ 안동·예천 경북신도청 중심으로 경북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경북의회가 지역대표주민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도청, 의회, 학계 지역원로 등이 함께 참여하는 '도민화합 정책개발 위원회'를 설치하여 경북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동·예천 신도청 지역에 관광코스를 비롯해 전통시장과 맛집거리를 조성해 많은 도민이 찾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1년에 1~2회 신도청시대 도민화합 한마음 갖기 농경문화 민속놀이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도민화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 ≫ 구체적인 방안으로 먼저 각 시군이 주관하는 문화행사를 신도청에서 지속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여러 시군을 동일한 문화권으로 묶어 신라문화권역(경주, 포항, 영천), 가야문화권역(고령, 성주, 상주), 선비문화권역(안동, 영주, 예천)별로 문화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경상북도 차원에서 도민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 ≫ 또한 현재 시군마다 개최하고 있는 특산물 축제를 유사한 지역 특산물로 묶어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경북지역의 경제유발효과를 높이고, 특산물 판매를 통해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산물을 중심으로 동해안 축제(영덕·울진 대개, 포항 과메기, 울릉도 오징어), 경북 남부 복숭아·자두 축제(청도, 경산, 영천, 김천, 군위, 의성, 영덕), 경북 서부 과채류 축제(성주, 고령, 칠곡), 경북 북부 산나물 약초 축제(봉화, 안동, 영양, 청송, 울진)를 지역별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경북농업의 미래, 치유농업으로 열어야

경상북도의회 의정자문단
황종호 자문위원
전) 선산농업협동조합장



1. 치유농업, 유럽에서 새로운 도농 상생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정서·심리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힐링’과 비슷한 개념으로 상처나 증상을 다스리는 행위인 치료와 그에 관여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늘날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농 상생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 ≫ 오랜 시간 농업은 치유에 이용되었다. 최근에는 체험 등 관광농업의 단계를 넘어 국민건강과 농업체험을 연계하는 치유농장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1950년대부터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활용되었으며, 2000년 이후는 각 국가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건강농업, 사회농업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유럽의 국가들은 학습장애, 정신질환 질환자, 마약중독자, 치매노매 등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스위스와 스웨덴의 경우 치유농업을 취약어린이의 전인교육과 연계하고 있다.

2. 경북의 치유농업, 장기적인 육성정책으로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 ≫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사회는 최근 약물중독, 학교폭력, 사회부적응 등의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노인인구 증가로 가난과 질병에 고통 받는 노인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유농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 국내 치유농업은 시작단계이지만, ‘힐링’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기존의 농업 체험에 질병 치료를 연계하는 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례로 치유관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중심의 치유농업’과 교도소, 병원, 학교, 치유기관, 자선단체 등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치유중심의 치유농업’이 혼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치유농장 현황을 보면 수도권인 서울(404), 경기(410)를 제외하고는 충남·대전(246), 광주·전남(242), 대구·경북(224)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 ≫ 경상북도가 현재 치유농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농장’ 관련 정책은 조직부문, 교육부문, 제도부문, 연구·개발부문, 인력부문, 법/예산부문에 대한 장기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조직부문에서는 치유농장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시설확대 및 관련기관의 협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부문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치유농업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전문가 양성과 치유농업 커리큘럼을 개발하며, 농장의 안정적인 운영교육을 도입하고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치유농장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운영해야 한다. 제도분야에서는 공식기관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치유프로그램 인증제도 및 보험보상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정책연구를 통해 본 경북

경상북도, 평등하고 행복한 지역 만들기 위해 여성가족정책 공감도 높여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김명화 연구위원, 『2017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를 통해 본 정책과제』, 2017.

- 》 2017년은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 「경상북도 여성비전 프로젝트(2013~2017)」와 같은 주요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새로운 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모색과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역 내 성 평등 정도에 대해서는 평등하다는 견해는 30.9%에 불과했고, 여성이 불평등하다(53.5%)는 견해가 남성이 불평등하다는 견해(15.6%)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성별 불평등은 직장(43.9%), 사회(35.0%), 가정(20.1%) 순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승진/고용/해고(21.1%)와 더불어 사고방식(16.1%), 사회구조/정책(12.9%), 가사/집안 경조사(11.4%)와 관련해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여성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층은 35.7%였고, 성비하 경험 24.6%, 언어폭력 경험 22.3%, 성희롱/성폭력 경험 16.1%로 나타났다.
- 》 경북의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평균 2.90점(5점 척도)으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의 문제(58.6%), 가사 및 육아에 남성의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48.6%), 여성 근로자의 보수가 남성에 비해 적은 문제(23.6%),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은 문제(20.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평등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39.3%)과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육정책(34.2%),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16.8%)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계획(2018~2022) 수립, 경북의 지역성평등지수 개선,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사업 강화가 필요하며, 성차별 해소를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추진, 여성 임금 격차 해소와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분야 여성참여 활성화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프로그램 개발, 함께 키우는 육아환경 조성을 제안하였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과 참여가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확산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및 개발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 거버넌스 구축과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경상북도, 지역사회가 다문화가족의 성장과 교육에 관심 기울여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배옥현 연구위원,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한 정책과제』, 2017.

- ≫ 경북도내 141개 초·중학교 사춘기 다문화학생(514명)과 다문화 담임(담당)교사(141명) 및 20개교의 초·중학교 사춘기 비다문화학생(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공부(성적/적성 등)에 대한 고민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 진로상담·진로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시설이용률은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38.0%), 다문화가족지원센터(36.0%), 청소년지원시설(27.5%), 시설복지관(11.3%)의 순이었다. 학업문제 해결방안으로는 가정에서는 부모교육(한국어/한국문화)(16.2%),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관심확대(15.2%)가, 프로그램으로는 멘토링 및 개인별 지도, 언어(한국어/한국문화교육)(각 11.4%)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 연구결과 첫째, 다문화가정이나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학교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용률(36%)은 저조하였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역 공동체 단위로 ‘초등돌봄 교실’은 숙제지도와 특기적성교육을, ‘지역아동센터’는 주요과목지도, 문화체험·야외활동·정서적 지원을 담당하여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학업문제 해결방안으로 부모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만큼, 생애주기별로 부모교육 서비스를 통해 교육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부모교육’과 이중언어 강사를 활용해 부모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다문화학생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공부’이며 진로상담 및 진학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다문화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다문화학생의 기초학력을 신장하고 진로지도와 정서적 소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과적 환류방안을 모색해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손제희·김민정 연구원, 『경상북도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현황 분석』, 2016.

- ≫ 자치법규는 다양한 영역에서 주민의 생활과 지역의 질서를 형성하고 규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와 함께 총량도 늘어나고 있어 자치법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정책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로 도출된 개선의견의 효과적 환류를 통한 정책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과적 환류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첫째, 정부위원회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 확보 및 정보제공을 제안하였다. 둘째, 일정기간 보직 변동 없이 일하면서 전문성을 쌓고, 여러 부서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인력 배치를 제안하였다. 셋째,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한 성주류화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인 및 부서 평가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였다. 넷째,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수립단계, 진행과정, 결과, 환류의 전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제도로 인한 효과, 도민 만족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를 제안하였다.

중증(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사업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경북행복재단 김성훈 선임연구원 외,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경북행복재단, 2017.

- ≫ 이 연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에 설립된 중증(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10주년을 맞아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업의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당초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보호형태로 주간보호센터 역할을 하는 센터들이 많아졌다. 도의 지침서나 업무편람에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목적으로 직업훈련, 공동작업장 운영, 취업 알선 및 적응지도 등으로 되어 있어 이용인의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11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계약기간이 없거나 형식적이었으며, 연령제한이 없거나 연령제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설립 초기에 계약기간이나 연령 제한 등을 두면서 이용인의 자립을 고취시키고자 하였으나 계약기간과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계약기간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연령은 만 40세까지 제한을 제시하였다.

시군장애인복지관, 복지서비스 기관 연계를 통해 자립생활지원기관으로 거듭나야

경북행복재단 남영우 연구원 외, 『시·군 장애인 복지관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경북행복재단, 2017.

-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으로 변하고, 활동보조인과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해 재활패러다임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위기에 봉착하였다. 장애인의 권리와 참여가 강조되는 수요자 중심 복지 패러다임으로 변화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와 지역주민으로부터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 및 프로그램의 질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상북도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해 사업수행의 과정과 내용, 중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자 및 이용자 대상 FGI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 시·군 장애인복지관 개선 방안으로 첫째,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시·군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복지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기능보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동원, 자원 연계 등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연계가 필요하다. 장애인고용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개발원 및 직업재활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수행기관,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를 통해 권익옹호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식의 부족 또는 왜곡은 사회통합을 방해하므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야 한다. 넷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준비가 필요하다. 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공식화됨에 따라 시·군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자 대상의 변화에 따른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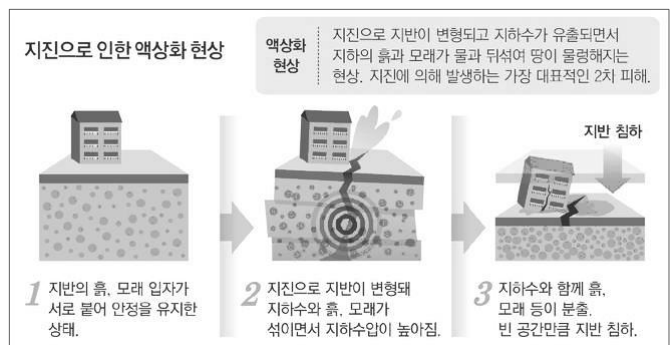
시사정보

■ 최신 이슈

액상화(液狀化) 현상이란?

≫ 액상화(液狀化, Liquefaction) 현상이란 1953년 일본의 지반공학자인 모가미(Mogami)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지진 등의 충격으로 땅이 지하수와 섞이면서 지반이 마치 액체처럼 물렁해지는 것을 말한다. 지진 등의 순간적인 충격으로 수압이 상승하면서 지반이 연약한 사질토(모래) 사이로 물이 들어가 고체 상태의 암석이 물처럼 변하는 현상으로 건물의 부상(浮上) 혹은 부동침하(不同沈下)가 발생할 수 있다. 주로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매립된 지역에 개발된 구조물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땅속의 대수층 표면인 지하수위(地下水位)가 지표면에서 10M 이내로 높아질수록 일어나기 쉽다.

≫ 액상화 현상이 관찰된 경우는 1964년 3월과 6월에 각각 발생한 미국 알래스카 지진(규모 9.2)와 일본의 나가가 지진(규모 7.5)에서 발생한 액상화 현상으로 도로가 균열되고, 대형 아파트가 기울어졌다. 1985년 멕시코에서 일어난 규모 8.1의 지진과 1995년 일본 고베 효고현에서 발생한 난부지진(규모 7.2)에서도 관찰되었으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에는 액상화로 인한 피해 건수가 2만 7천 건에 달했다.



≫ 우리나라에서도 14~17세기 지진 때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 1643년에 '부산 동래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경상도 합천 초계에서 마른 하천에서 탁한 물이 솟아 나왔다.', '울산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마른 논에서 물이 샘처럼 솟았고, 물이 솟아난 곳에 흰모래가 나와 1~2말이 쌓였다'는 기록이 있다.

≫ 액상화 현상에 대한 국내연구로 2016년 최재순 교수(서경대) 연구팀이 경남 양산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 액상화 발생위험도를 작성한 바 있다. 액상화는 느슨한 모래층 지반, 얇은 지하수, 큰 지진동의 삼박자가 맞으면 일어난다. 이 경우 진앙지에서 가까운 부산은 물론 멀리 떨어진 서울과 수도권의 상당구역도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액상화 현상은 사질토 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1999년 터키에서 발생한 코셀리 지진과 대만에서 발생한 차-치 지진의 경우를 살펴보면 비소성 실트 지반과 세립질 지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지질활성단층 정밀지도 제작은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24년 뒤인 2041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석도는 독도, 시마네현 총무부 소장 자료에서 일본인 구술록 발견

- ≫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하고,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울릉군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석도가 독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되었다. 시마네현 총무부 소장 자료에서 독도의 명칭이 ‘돌섬(石島)·독섬(石島·獨島)·독도(獨島)’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일본인의 구술록이 발견되었다.
-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제2조에서 ‘울도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할 사(事)’로 되어 있지만, 그동안 일본 정부는 석도가 독도라는 주장을 증명할 문헌이 없다는 이유로 석도와 독도는 다른 섬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구한말 울릉도 개척(1882년) 당시 이주한 많은 전라도 사람들이 돌로 된 섬을 ‘돌섬’ 혹은 ‘독섬’이라고 불렀고, 이를 한자로 적은 것이 ‘석도’(石島)라고 주장하고 있다.
- ≫ 이번에 발견된 구술록은 지난 1953년 7월 11일 어부였던 오쿠무라 아키라(奥村亮, 당시 43세)의 발언을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2과가 기록한 문헌인 ‘죽도 어업의 변천’이다. 울릉도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는 오쿠무라는 “당시 조선인은 ‘랑코섬’을 독도라고 했고 일본인과 대화할 때는 ‘랑코섬’으로 불렀다”고 구술했다. 구술록에서 독도 옆에 기재된 ‘도쿠손(トクソン)’이라는 글자에 주목했다. 도쿠손은 ‘독섬’의 일본식 발음으로, 일본인들이 독도를 죽도보다는 ‘랑코섬’이라고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면서, 돌섬·독섬·독도 음운변화설이 힘을 얻게 되었다.
- ≫ 해방 직후 국내에서 창간된 일간지 ‘한성일보’ 1948년 6월 13일자에도 ‘독도는 우리의 섬, 원명은 돌섬(石島)’라는 제목이 기사가 실린 바 있다. 독도의 원래 이름은 돌섬(石島)이었는데, 이후에 송도(松島) 또는 독섬(獨島)으로 변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쿠무라 아키라의 구술록」

※ 「오쿠무라 아키라 구술록」의 줄선 옆 문장은 “당시 조선인은 ‘랑코섬’을 독도라고 했다”는 뜻이다(동북아연구소 자료 인용).

읽어 볼 만한 책



인간의 살림살이

칼 폴라니 지음, 이병천 외 옮김 | 후마니타스 펴냄 | 2017. 9.

『거대한 전환』의 저자로 유명한 칼 폴라니(Karl Polanyi 1886~1964)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수도 빈에서 태어났다. 1933년 독일에서 나치가 집권하자 영국으로 망명하였고, 1940년 미국 버몬트의 베닝턴 대학에 자리를 잡았다. 1947년에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일반경제사를 가르쳤다.

이 책은 칼 폴라니의 유작으로 전근대 시기 비시장경제의 형태, 그 진화 및 다양성을 보여 줌으로써 현대 시장 체제를 상대화하고 대안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 『거대한 전환』의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경제주의의 오류, 즉 인간의 경제를 그 시장형태와 동일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함을 역설한다. 특히 인간 사회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위치를 좀 더 현실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일반 경제사를 폭넓은 개념적 기초 위에 재건하려 시도하고 있는데, 그 개념적 기초가 바로 이 책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체적 경제(실체적 비시장경제학, 다시 말해 인간의 살림살이)이다.



강한 리더라는 신화 : 강한 리더가 위대한 리더라는 환상에 관하여

아치 브라운 지음, 홍지영 옮김 | 사계철 펴냄 | 2017. 10.

저자인 아치 브라운(Archie Brown)은 영국의 정치학자이며 역사학자로 옥스퍼드대 정치학 명예교수 겸 세인트앤터니스칼리지 명예 펠로우이다. 1991년에 영국학사원 회원, 2003년에 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 명예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영국에서 정치학 분야 최고 저술에 주는 매켄지 상을 2회 수상한 바 있다.

민주국가에서도 군계일학의 리더에 대한 환상이 널리 퍼져있다. 강한 리더가 바람직한 리더라는 것이 하나의 신화라면, 리더의 강한 이미지가 책략과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신화의 다른 면이다. 저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샤를 드골, 마거릿 대처, 덩샤오핑, 넬슨 만델라 등 성공한 리더의 사례를 통해 리더의 유형을 정의형 리더, 변혁적 리더, 혁명적·권위주의적·전체주의적 리더로 분류한다. 특히 만들어진 중심을 차지하는 대신에 자신이 서 있는 곳으로 중심으로 옮기는 '재정의형(reshape) 리더'와 정치 또는 경제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사회를 진일보시키는 '변혁적 리더'에 주목한다. 그리고 다면적 분석과 통찰을 통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살핀다. 좋은 리더는 반대자의 의견 또한 진지하게 고려한다. 이 책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요구하는 강한 리더가 누구인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준다.



과로노인 :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보통사람들의 정해진 미래

후지타 다카노리 지음, 홍성민 옮김 | 청림출판 펴냄 | 2017. 10.

저자인 후지타 다카노리(藤田 孝典)는 NPO 법인 '핫플러스'의 대표이사이자, 세이가쿠인대학 객원 조교수, 반빈곤네트워크 사이타마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2013년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 특별부회 위원을 지냈으며, 사회복지사로 생활 곤궁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오늘날 일본의 하류노인들, 수입과 저축이 없고, 의지할 사회적 관계가 없어 극빈층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노인 빈곤 문제를 적나라하게 밝혔다. 문제는 한국에서도 이미 수많은 하류·과로노인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층 고용구조 변화와 소득 불평등」에서는 2014년 현재 노인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하는 노인의 80%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시직, 일용직 종사자였다. 무엇보다 생계를 위해 낮은 질의 일자리로 내몰린 이들은 아무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문제다. 이 책은 우리가 노후에 최악의 빈곤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정책적 해결 방법과 개인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



정치인의 식탁 : 인물과 음식으로 읽는 식탁 위의 세계사 이야기

차이쯔창 지음, 이화진 옮김 | 애플북스 펴냄 | 2017. 11.

저자인 차이쯔창(蔡子強)은 홍콩 중문대 정치행정학과 교수이며, 정치학자이다. 특히 「명보」, 「두조일보」 등 중국 대륙 및 홍콩 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하는, 예리하고 신랄하게 시사를 파헤치는, 영향력 있는 저명한 시사평론가이다.

최근 한미정상회담에 등장한 '독도새우'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저자는 이처럼 '식탁 위에도 엄연히 정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사를 뒤쫓는 무솔리니와 스탈린, 간디, 오바마 등 세계적 정치가 33인이 즐겨 먹었던 음식, 특이한 식습관을 통해 세계사를 다르게 읽어준다.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진짜 성격, 정치스타일, 세계관, 역사관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 책은 이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과 식습관을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소개해 그동안 몰랐던 정치인들의 솔직한 속내와 세계사의 주요 고비에 어떤 음식이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식탁외교'가 갖는 의미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드골의 '치즈 통치론'과 스탈린의 '캐비어', '핫도그'가 영국과 미국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통해 음식이 세계 정치에 미친 영향을 보여준다. 이 책은 음식과 정치의 상호관계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사를 이해하게 도와준다.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

입법정책 정보

Legislation & Policy Information

입법 정책 정보

제10대 의회 제14호

(통권 제26호)

발행인 경상북도의회위원장 김응규

편집인 입법정책관 이복영

발행일 2017. 12.

발행처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편집 및 교정 입법정책관실 ☎ 054)880-5066